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15462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11.17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3.06.16

Homepage
www.gyobokmall.co.kr
E-mail
gb0692@naver.com

[교 복 몰]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지비엠]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 .

[주식회사 지비엠]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606, 529호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70-8885-0692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70-4015-3507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70-8885-0692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지비엠	교복몰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606, 529호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7.05.30	2017.05.30	김진,박근용	070-8885-0692	070-4015-3507
	법인등록번호	110111-6415940	사업자등록번호	506-81-9275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606, 529호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대표	김진	교복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진,박근용	070-8885-0692	070-4015-3507
대표	박근용	교복몰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진,박근용	070-8885-0692	070-4015-350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과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교복몰]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교복몰		교복대여전문점	
상 호		교복몰 000점		가맹점의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음	
상표(서비스표)			상표권자	주식회사 지비엠	
			등록일	2018.06.14	
			등록번호	제40-1368300호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832,161	1,208,070	624,091	2,851,932	194,457	147,518
2022년	1,956,340	1,272,990	683,350	2,695,983	-57,148	59,258
2023년	2,120,665	1,380,713	739,951	2,310,531	77,035	56,601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별첨3 참고.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교복물] 가맹사업에 따른 관련매출액을 별도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 진	대 표	2017.05.30.~현재.	주식회사 지비엠대표	회사경영전반
	박근용	대 표	2017.05.30.~현재.	주식회사 지비엠대표	회사경영전반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2	-	1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①	사업내용 ^②
가맹본부	해당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교복물	상표권	2017년06월28일 출원	4020170080197	주식회사 지비엠	-
		2018년06월14일 등록	제 40-1368300 호	주식회사 지비엠	2028.06.14

당사는 귀하가 사용할 상표(특허) 사용을 위하여 출원등록되었으며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출원신청만 한 경우)에는 “당사의 상표 등을 사
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교복몰]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22년 01월 01일

(직영 운영을 시작한 날 : 2017년 05월 30일)

2. [교복몰]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교복몰	교복몰	김 진 박근용	2021년 11월 ~ 2022년4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212, 2층224호(잠실동, 갤러리아펠리스)
주식회사 지비엠	교복몰	김 진 박근용	2022년4월~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606, 529호 (가산동, 대성디폴리스지식산업센터)

3. [교복몰] 업종

영 업 표 지	업 종	
교복몰	대 분 류	소 분 류
	의류.패션	교복의류대어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교복몰]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 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 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 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 체	1	-	1	6	5	1	6	5	1
서울	1	-	1	4	3	1	4	3	1
부산	-	-	-	1	1	-	1	1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1	1	-	1	1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최근 3년간 [교복몰]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0	0	0	0	0
2022	0	5	0	0	0	5
2023	5	0	0	0	0	5

*서울 잠실직영점의 2022년7월 가맹점으로 전환된 가맹점 포함.

6. [교복몰]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해당없음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평균매출액 (상한)		연간평균매출액 (하한)		
		연간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5	110,615	3,014	228,573	4,590	36,979	460	-

서울	3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5곳 미만
대전	-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1	해당없음						5곳 미만
강원	-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남	-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5곳 미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식회사 지비엠으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위 당사의 매출액산정에 있어 가맹점은 6개월이상 영업점 기준하여 산정하였으며,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5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8.[교복몰]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5	593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사항 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교복몰]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천원, 부가세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비공개	211,495	211,495	-	-
광고	비공개		-	-		
	비공개		-	-		
	비공개					
	소계		-	-		
판촉	비공개		-	-		
			-	-		
			-	-		
	소계		-	-		

* [교복몰]가맹사업관련한 광고,판촉비 지출내역은 2023년 당사의 손익계산서 광고선전비이며 영업표지별 광고,판촉비 지출내역은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주)신한은행	반포서래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래로34 신한은행	02-593-580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

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지비엠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 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항 목	내 용	비 고
보험 상품명	프랜차이즈 보증보험	-
보험인(보험회사)	-	-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식회사 지비엠	-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사업 개시일	-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 범위 내	-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청구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여부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30일 정도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

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교복몰]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추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입비	22,000	계약체결 일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모집을 위해 비용 소요	영업을 시작하면 가맹비로 대체
교육비	11,000	계약체결 일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가맹점별 당사자협의	계약체결일	본사가 공급한 물품대금 미지급 및 물품파손	계약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잔존 채무액 정산 후 잔액 지불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33,000
가입비	22,000
교육비	11,000
보증금	가맹점별 당사자협의 (부가세 없음)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V.1.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165㎡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3.3㎡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총계		123,805	2,476	개점 이전	총금액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117,865	2,357.2	공사시작 전	165㎡ 기준 업체개별공사에 본사의 설계 및 감리시 3.3㎡당 33만원(부가 세포함)을 본사에 지 급해야함.
간판	협력업체	5,940	118.8	공사시작 전	
매장가구,집기설비	개별선정업체	-	-	기기설치 전	참고: V.1.1)
최초공급상품	가맹본부	가맹점별 협의	가맹점별 협의	제품배송전	참고: V.1.1)
POS설비	개별선정업체	-	-	공사시작전	참고: V.1.1)

*건물 내.외부 특이사항과 관련된 추가공사비용, 집기구입비, 전기증설비 등에 의해 매장별로 차이가 날수 있음.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상담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보

*가맹본부는 점포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여
최종의사 결정은 가맹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맹사업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제한없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제한없음	만19세 이상일 것

*기타

- (1)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 시 협의된 최소한의 인력을 채용하여 가맹본부에 개점에 필요한 교육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 (2)가맹본부는 기기설비 설치완료 후 본부소속의 교육바이저를 해당 가맹점에 파견 시킵니다.
- (3)가맹본부가 파견한 교육바이저는 최소 7일에서 최장 10일 까지 이며, 해당 매장에서 개점과 영업에 필요한 제반 교육을 실시합니다. 해당 가맹점의 필요에 따라 교육바이저의 추가교육과 근무가 필요시는 본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가맹사업자가 부담한다.
- (4)가맹사업자와 가맹사업자가 고용한 직원들은 본사가 파견한 교육바이저의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교복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	잔금
금액		총액의 30%	30%			4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15일			계약일+1월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V-8]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구분	지급대상자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총매출액 3.3%	매월 05일	후불로 반환 안됨	후불로 반환 안됨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전	교육 개시 전 전액 반환	교육 개시 후에는 반환 불가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금 제외 후 비용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반환불가	전국광고를 시행할 경우 후불제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반환하지 않음	V-9 참고
손해보험 가입	개별보험 업체	실비	별도			
모바일 상품권	해당사항 없음					
관리시스템 (POS)	개별선정 업체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업체와의 계약에 따름	-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VII-1 참고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교복몰]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식회사 지비엠]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VAT포함)

구분	금액	비고
가입비	22,000	-가맹 계약의 전체기간(2년)을 부여함. -양도 당시 신규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는 금전을 기준으로 하므로 변동 가능함.
교육비	11,000	
물품보증금	가맹점별 당사자협의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6]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의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②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대한 채무전액을 즉시 변제하고, 가맹본부가 제공한 경영기법 또는 지적재산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③가맹점사업자는 기타 가맹본부의 상호 및 상표, 가맹본부의 사양에 의하여 설계된

시설 인테리어 및 구조물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물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메뉴얼, 문서, 도면, 기타 도서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⑤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시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의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귀하가 [교복물]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설비 및 집기시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초도물품> 1인 SET상품대여: 치마&바지,조끼,넥타이,자켓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와 거래할 품목은 가맹점별 위치와 크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해당없음(제품대여이며 가격은 책정되지 않음)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교복몰]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교복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않습니다.
- 2) 당사가 [교복몰]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별첨 2]	당사가 지정한 메뉴 이외의 품목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공급 중단 또는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제한내용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책임 :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해지
다른 가맹점 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 통지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조언 내지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권장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권장가격>은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권장(조언)가이며, 가맹점이 판매촉진 등의 필요한 <권장가격>과 다르게 판매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에 빠짐없이

가맹본부에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 후에 가격을 결정합니다.

판매상품별 권장가격은 [별첨2]과 같습니다.

4.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체결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교복 및 의류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교복몰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광역자치단체의 시,군,구 기준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영업지역내 백화점,대형할인센터 등 대형쇼핑몰 과 테마파크 및 공항은
특수상권으로서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본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변경)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협의 여부 회신 -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교복몰]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쿠팡	www.coupang.com	가맹본사 판매물품	가맹점외 지역
	티몬	www.tmon.co.kr	가맹본사 판매물품	가맹점외 지역
	네이버	www.naver.com	가맹본사 판매물품	가맹점외 지역
온라인	본사홈페이지	www.gyobokmall.co.kr	가맹본사 판매물품	가맹점외 지역
홈쇼핑	해당없음	-		

*가맹사업에 있어 온라인판매상품은 지역별,가맹점별 사용제한하여 공급진행함.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	90.21 %	-	7.82 %	1.97 %

***매출액비중은 가맹본부의 제출비중내역임.**

- ① 매출액 비중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하며,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해당 채널의 판매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
- ② 기타 온라인 매출액이란 가맹본부가 자사 온라인몰을 제외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과 온라인 채널에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해당없음	해당없음

- ① 오프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가맹점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 ② 온라인 전용상품이란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거나 가맹본부가 온라인 플랫폼에만 공급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온라인 전용상품 수/해당 영업표지의 상품 수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최초 가맹계약 기간: 2년
- 재계약 또는 갱신 시 계약기간: 1년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
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②)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 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가맹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6조 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6조 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 2항
○ [주식회사 지비엠]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 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6조 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업종을 영위한 경우	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 매입을 하거나 품질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34조 1항
○ 가맹점의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34조 1항
○ 허용한 영업표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범위 외에 가맹본부의 서면동의 없이 소모품 및 비품을 인쇄하거나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경우	34조 1항
○ 영업표지변경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34조 1항
○ 가맹본부의 감독 및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품질기준과 영업 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물품대금 등을 2회이상 지체 및 채무액이 물품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휴업하는 경우	34조 1항
○ 가맹점운영 매뉴얼과 매장운영상 주요지침규정을 위반한 경우	34조 1항
○ 가맹점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규정에 대한 협의나 시설의 교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에 불참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영업의 양도와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및 영업상속후 가맹본부의 승인과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34조 1항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34조 1항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34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을”은 가맹계약서 제34조2항에 해당하는경우는 동조 제1항 본문에 정한바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4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4조 3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4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경우	34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4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4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4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4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4조 3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관련법규 및 법령의 개정에 의한 조건 수정	41조 5항

○ 가맹계약의 연장 및 갱신시	6조
○ 영업지역의 개발등의 변화로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변경시	5조 4항
...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동의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개월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본부 (070-8885-0692)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과의 가맹계약은 양도인의 잔여 계약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수인이 요구할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맺은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①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15일 전에 가맹본부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가맹본부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을 승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르는 가맹비, 교육비 및 물품보증금(양수도 당시의 가맹비, 교육비 및 물품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도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가맹점사업자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④가맹본부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 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맹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비용을 부담합니다.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경영	본부 승인시 가능	본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원칙적으로 대행 또는 위탁운영을 할 수 없으나,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증빙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가맹본부의 증빙자료 검토 후 승인 하에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교복몰]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 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교복물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업종 또는 품목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6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교복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일 14시간이상	365일 연중 무휴 영업	가맹본부 070-8885-0692

- 영업시간의 제한 내용 : 가맹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오전 09시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오후 11시에 영업을 마감하며,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수의 제한 내용 : **년간365일** 개점하는 것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하여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의 특수성 및 상권에 따라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영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자율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가맹본부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교복몰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	가맹점		
광고	상품광고	광고비 50%	전체가맹점 광고비 5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사전동의(50%이상) → 가맹점 부담액 통보 →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완납	전국광고 (tv, 라디오, 5대 일간지등)
	상품광고+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전체가맹점 사업자 25%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없음		
판촉	할인, 증정, 팸플렛 등	50%	50%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부 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 사 참여여부 가맹점사업자 의 사전동의(70%이상)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 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사업에 적용가능함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전약정관련**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본부 또는 당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을”의 귀책사유(일방적인 변심 등)에 의하여 개점전 해약을 요청할 경우 “을”은 이미 진행된 인테리어 비용 및 해약에 따른 철거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지급받은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한다. 다만, 개점전 교육비, 인테리어비 등과 같이 계약기간에 따른 선금금의 성질을 갖지 않는 가맹금중 이행이 완료된 급부의 대가에 해당하는 가맹금에 관하여는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반환하지 아니한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이내	100만원
계약체결 또는 금전지급 후 24시간이후 10일이내	200만원
계약체결 후 10일 이후 가맹점오픈 이전	300만원
개점 관련 발생하는 인테리어,설비공사비용 등	실제발생비용 전액 및 철거비

○가맹비이외 구체적사항

위 약 별 사 유	관련 계약조문
귀하는 계약기간내 또는 계약종료이후 제18조(비밀유지의무), 제19조(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금삼천만원(₩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한다.	가맹계약서 제36조 제2항
귀하가 제22조,제23조 공급품에 대하여 제24조1항단서의 제외하고 자점매입을 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별로 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한다.	제36조 제3항
귀하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후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간판,기타 표시물등에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귀하는 계약종료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을 1일 금일십만원(₩100,000원)씩 당사에게 지불하여야한다.	제36조 제4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VAT포함/50 m²기준)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참고 [IV-1]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2~41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0~26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5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4~22(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1(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0~5(15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4~2(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통알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자양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착공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 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비용분담 등에 대한 기준을 두었으나 현재 판매촉진에 관한 행사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사항 없음				
판촉장려금	해당사항 없음				
판촉지원	해당사항 없음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사항 없음				
반품지원	해당사항 없음				
마일리지	해당사항 없음				
CRM	해당사항 없음				
테스터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본부

	매장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070-8885-0692)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매장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본부 (070-8885-0692)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교복물]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교복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교복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1주 (1일 12시간)	가맹비에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교육	별도계획	필요시 산정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시	필요시 산정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6조에 따라 기기설비 설치후 2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6조에 따라 3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가산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664 2층 205호
2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9개월	연중무휴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③
60,000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POS상 매출액을 근거하며 법인 총매출액에서 추산매출액임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70-8885-069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상담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영업표지

1.등록 여부

<영업표지 등록 현황 표>

이미지	구분	등록권리자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만료 (예정)일
	상표, 서비스표	주식회사 지비엠	2018년 06월14일	제 40-1368300 호	2028.06.14

2.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

교복몰

당사는 귀하가 사용할 상표(특허) 사용을 위하여 교복몰은 등록되었으며
지식재산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출원신청만 한 경우)에는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3.지적재산권 등록권리자 및 소유자의 성명: 주식회사 지비엠

4.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하게 될 상호: 교복몰 ()점

5.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하게 될 명칭: 교복몰

●기타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해당없음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별첨 2

<판매상품 및 권장가격> 교복물

판매상품명	권장가격(단위:원)
1인 SET 상품대여	15,000

*1인 SET상품대여: 치마&바지,조끼,넥타이,자켓 포함한 상품임.

<2021년 재무제표>

[표준대차대조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표준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년 재무제표>

[표준대차대조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표준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년 재무제표>

[표준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표준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가맹희망자)

본인은 「교복몰」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의 최종 수정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2.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④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⑦교육·훈련프로그램
4.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5.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_____ (인)	수령자: _____ (인) 주민등록번호:(_____ - _____)
-----------------	--

------(절취선)-----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문서보관용)

본인은 「교복몰」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사의 정보공개서를 수령하는 경우에 귀사의 영업비밀 또는 사업에 관한 중요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임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정보공개서의 최종 수정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2.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①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③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범위반사실 ④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시간 ⑦교육·훈련프로그램
4.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5.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본부: _____ (인)	수령자 : _____ (인) 주민등록번호 : (_____ - _____)
-----------------	---